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08호

2020. 9. 2.

건명	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(관광체육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·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·관광정책을 진흥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논산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설립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 함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)
- 나.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명시 함(안 제6조)
- 다. 정관, 임원, 이사회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- 라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2조)
- 마.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3조)
- 바.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, 사업연도, 사업계획,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)
- 사. 감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7조)
- 아.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9조)

□ 검토의견

-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·관광 서비스 및 정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논산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「민법」 제32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